

대한가정의학회 출판 윤리와 관련된 규정과 절차

1) 투고규정 보완

출판 윤리와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과 절차를 둔다.

가. 이중 게재 의심

(1) 심사 단계

- 간행위원회는 이중 게재 정도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 - **경미한 중복** : 일부 중복이 있지만 그 정도가 경미한 것(예 : 하위 집단, 추적관찰 기간 연장 등)
 - **중대한 중복** : 중복이 있고 그 정도가 중대한 것(예 : 전부, 일부 자료가 동일, 제목, 저자 순서 변경, 과거 논문 인용 하지 않는 등 저자가 이중게재를 숨기려 한 증거가 있음)
- 경미한 중복이 있으면 저자에게 학술지의 입장을 알리고 인용하지 않은 원 논문 추가, 인용 요청 혹은 중복된 자료 제거 후 심사 진행한다.
- 중대한 중복이 있으면 교신저자에게 알리고 해명을 요청한다. 만일 저자 답변이 충분하고 합리적 이면(예 : 고의가 아닌 실수, 투고규정 모호함, 초보 연구자) 모든 저자에게 알리고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.
- 응답이 없거나 저자 답변이 불충분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게재 불가 처리하고 추가적인 징계에 대해 논의한다(징계 조치 참조).

(2) 게재 이후

- 이중 게재 정도를 심사단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한다.
- 경미한 중복이 있으면 저자에게 학술지의 입장을 알리고 인용하지 않은 원 논문 추가, 인용 등에 대한 논문 수정을 저자와 상의한다.
- 중대한 중복이 있으면 교신저자에게 알리고 해명을 요청한다. 만일 저자 답변이 충분하고 합리적 이면 논문 게재 취소(retraction) 한다.
- 응답이 없거나 저자 답변이 불충분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게재 철회 처리하고 추가적인 징계에 대해 논의한다(징계 조치 참조).

나. 표절 의심

(1) 심사 단계

- 간행위원회는 표절 정도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 - **경미한 표절** : 일부 표절이 있지만 그 정도가 경미한 것(예 : 짧은 구절을 복사한 정도의 표절, 자료에 대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음 등)
 - **중대한 표절** : 표절이 있고 그 정도가 중대한 것(예 : 많은 문장이나 자료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고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제시한 경우)
- 경미한 표절이 있으면 저자에게 학술지의 입장을 알리고 저자에게 표절한 문장을 다시 기술하거나 참고문헌에 인용하도록 하고 심사 진행한다.
- 중대한 표절이 있으면 교신저자에게 알리고 해명을 요청한다. 만일 저자 답변이 충분하고 합리적 이면(예 : 고의가 아닌 실수, 투고규정 모호함, 초보 연구자) 모든 저자에게 알리고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.
- 응답이 없거나 저자 답변이 불충분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게재 불가 처리하고 추가적인 징계에

대해 논의한다(징계 조치 참조).

(2) 게재 이후

- 표절 정도를 심사단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한다.
- 경미한 표절이 있으면 저자에게 학술지의 입장을 알리고 인용하지 않은 저자에게 표절된 문장을 다시 기술하거나 참고문헌에 인용하도록 하는 등의 논문 수정을 저자와 상의한다.
- 중대한 표절이 있으면 교신저자에게 알리고 해명을 요청한다. 만일 저자 답변이 충분하고 합리적이면 논문 게재 취소(retraction) 하고 이를 독자에게 알린다. 표절로 저작권 침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관에 알린다.
- 응답이 없거나 저자 답변이 불충분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게재 철회 처리하고 추가적인 징계에 대해 논의한다(징계 조치 참조).

다. 저자의 변경

(1) 심사단계

- 저자 변경에 대해 서면으로 신청을 받는다. 이때 변경의 사유와 모든 저자의 동의서를 받는다.
- 교신저자가 새로운 저자를 추가하도록 요청하였을 때 모든 저자가 동의하였고, 저자 변경 사유가 합리적이면 저자를 변경하여 심사를 진행한다. 이때 한 명의 저자라도 동의하지 않았으면 심사를 중단하고 저자 문제가 합의된 이후 다시 재개한다.
- 교신저자가 저자 일부를 빼도록 요청하였을 때 모든 저자가 동의하였고, 저자 변경 사유가 합리적이면 저자를 변경하여 심사를 진행한다. 이때 한 명의 저자라도 동의하지 않았으면 심사를 중단하고 저자 문제가 합의된 이후 다시 재개한다.
- 교신저자 혹은 제1저자의 변경을 요청하였을 때는 좀 더 보수적으로 결정한다.

(2) 게재 이후

- 원칙적으로 게재 이후의 저자 수정은 불허한다.
- 불가피한 이유로 저자 수정이 필요하다고 편집장이 인정한 경우에 모든 저자의 동의를 확인 한 후 정정 기사(correction)를 낼 수 있다.

라. 징계 조치

- 간행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징계를 결정하고 이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한다.
 - 부정행위에 대한 경고 서한 발송
 - 부정행위의 책임이 있는 개인 혹은 기관에 대하여 일정기간 원고 투고의 금지(2년)
 - 소속 기관장이나 연구비 지원기관에 공식 서한 발송

마. 절차

- 출판 윤리에 대한 사안의 인지는 제보, 간행위원회 인지, 심사위원의 인지, 저자의 자발적 신고 등으로 가능하다.
- 제보자 보호를 위해 익명제보를 허용하며, 제보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다. 또한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다.
- 제보자나 인지한 심사위원은 해당 내용을 간행위원장에게 이메일로 알리며 간행위원장은 해당 사안의 상정 여부, 경중 등을 판단한다.
- 게재 불가, 게재 취소는 간행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추가적인 징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